사물인터넷(IoT) 제품 보안시험·인증 지침

제정 2017. 12. 04. 개정 2018. 12. 28.

제 1 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이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의 「사물인터넷(IoT) 정보보호 로드맵」에 따른 사물인터넷(Internet of Things) 제품 보안 시험·인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필요 사항을 규정하 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제2조(시험·인증 원칙) 진흥원은 시험·인증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· 인증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 - 1. 사물인터넷 제품 보안시험·인증 신청인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에 대한 편 견과 선입관을 배제하고 공정한 시험·인증 수행
 - 2.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험·인증 수행
- 제3조(용어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.
 - 1. "사물정보"라 함은 사물의 속성·위치·상태 및 사물 주변의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.
 - 2. "사물인터넷(이하 "IoT"라 한다)"이라 함은 사물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람 간에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제품이 사람의 개입 없이 능동적이고 지능적으로 상호간에 사물정보를 주고받는 서비스 및 기술을 말한다.
 - 3. "IoT 제품"이라 함은 계통적·유기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감지, 제어, 중계, 촬영, 관리, 운행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, 장치, 모바일앱 등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한다.
 - 4. "시험기준"이라 함은 시험제품의 보안을 시험하는데 활용하는 유효성이 확립된 시험절차를 말한다.
 - 5. "신청인"이라 함은 시험제출물(이하 "제출물"이라 한다)을 진흥원에 제출하고 시험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.
 - 6. "제출물"이라 함은 신청인이 IoT 제품 보안에 대한 시험을 위하여 진흥원 에 제출하는 IoT 제품 및 모든 문서를 말한다.
 - 7. "시험자"라 함은 IoT 제품의 보안시험을 담당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 - 8. "인증담당자"라 함은 IoT 제품의 보안인증 심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9. "시험"이라 함은 신청인이 제출한 IoT 제품을 시험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

을 말한다.

- 10. "인증"이라 함은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IoT 제품 보안이 시험기준 및 규정된 요구조건에 적합하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.
- 11. "시험제품"이라 함은 신청인이 시험을 신청한 후 인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의 IoT 제품을 말한다.
- 12. "인증제품"이라 함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IoT 제품을 말한다.
- 13. "시험보고서"라 함은 IoT 제품의 시험내용 및 결과에 관한 진흥원의 내부용 무서를 말한다.
- 14. "인증보고서"라 함은 IoT 제품의 시험 및 인증결과를 기록한 진흥원의 내부 용 문서를 말하다.
- 15. "인증서"라 함은 IoT 보안시험을 수행한 결과가 통과되었음을 진흥원이 확정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.
- 16. "재시험"이라 함은 인증 제품의 보안기능 향상, 추가 등으로 버전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.
- 17. "인증연장"이라 함은 인증제품의 변경 없이,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진흥원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.
- 18. "담당부서장"이라 함은 IoT 제품 보안시험·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지침은 IoT 제품에 대해 수행하는 다음의 업무에 적용된다.

- 1. IoT 제품 보안시험 업무
- 2. IoT 제품 보안인증 업무

제 2 장 시험 절차

- 이 장에서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IoT 제품의 보안시험 신청 절차에서부터,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하는 시험업무 수행 과정의 주요절차 및 세부 활동사항을 명시한다.
- 제5조(시험준비 지원) 진흥원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,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준비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.
- 제6조(시험신청 및 시험계약 체결) ① IoT 제품 보안을 시험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신청 서(별지 제1호 서식)와 제출물을 구비하여 진흥원에 시험신청을 하여야 한다.
 - ② 시험제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.
 - ③ 시험자는 시험신청서 및 제출물 접수 시 관련 사항을 시험신청 접수대장(별지 제2호 서식)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시험신청 접수증(별지 제3호 서식)을 발급하다.
 - ④ 시험자는 시험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제출물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청 인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시험신청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
 - ⑤ 시험자는 시험신청서 및 제출물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, 시험 계약 담당부서 에 시험계약 체결을 의뢰한다.
 - ⑥ 시험계약 담당부서는 신청인과 협의한 후 별지 제11호에 따라 시험계약을 체결한다.
- **제7조(시험제출물 관리)** ①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물을 접수한 경우, 시험자는 시험제출물 인수/인계증(별지 제4호 서식)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복사본을 발급한다.
 - ② 시험자는 접수한 제출물을 시험제출물 목록대장(별지 제5호 서식)에 등록한다.
- 제8조(시험업무 수행) ① 시험자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제품의 보안을 시험한다.
 - ② 시험자는 시험과정에서 제출물이 미비하여 시험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 인과 제출물 보완 사항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고, 협의한 내용을 신청인 협의록 (별지 제6호 서식)에 기록하여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.
 - ③ 시험자는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시험환경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시험자는 시험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 관(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KS Q ISO/IEC 17025에 따른 국제공인시험기관)을 활용할 수 있다.

- 제9조(시험 중단) ① 시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.
 - 1. 제출물의 보완을 요청받은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2.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험을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 시험자는 시험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한을 정하여 시험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시험자는 신청인이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험을 중단하고 시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험 종료 처리) ① 시험자는 시험이 종료된 경우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.

- ② 시험자는 신청인이 시험보고서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은 다른 신청인의 시험보고서에 대한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.
- ③ 시험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시험보고서 개요
 - 2. 시험제품의 기본 구조 및 시험환경
 - 3. 시험제품의 시험내용 및 결과
- ④ 시험자는 시험이 완료되면 시험결과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물을 정리하여 보관한다.

제 3 장 인증 절차

- 이 장에서는 시험이 완료된 후부터 인증서 교부까지 인증업무 수행 과정의 주요절차 및 세부 활동사항을 명시한다.
- **제11조(인증업무 수행)** ① 인증담당자는 시험보고서의 내용이 시험기준 및 인증유형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.
 - ② 진흥원은 신청인의 시험결과가 시험기준 및 인증유형에 부합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며, 인증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.
 - 1. 시험제품에 대한 명칭, 모델명, 버전
 - 2. 인증서 인증번호, 인증유형, 발급일, 유효기간
 - 3. 신청업체명, 대표자, 소재지
- 제12조(인증서) 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인증을 2년간 연장할수 있다.
 - ② 인증서 발급 시 수령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증서(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제13호 서식)를 교부한 후 인증서 수령증(별지 제7호 서식)을 접수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인증유형 및 시험기준) ① 인증유형이란 인증을 받고자 하는 보안수준의 난이도 등급을 의미한다.
 - ② IoT 제품 보안인증을 위한 유형 및 시험기준은 담당부서장이 정하며, 홈페이지 (www.kisa.or.kr. www.kisis.or.kr)를 통해 별도로 공지한다.
- 제14조(인증위원회 구성) ① 진흥원은 인증유형, 시험기준의 변경 등 인증업무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인증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 - ② 위원회는 IoT 관련 관계기관,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 10인이내로 구성하며, 진흥원장이 위촉한다.
 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2인, 간사 1인을 둔다.
 -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중 해촉하지 않는다.
 - ⑤ 위원 중 임기 만료 이 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하며,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 - ⑥ 위원 선발 시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에 있거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및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는 제외한다.
- 제15조(인증위원회 위원장 등) ① 제14조 제3항에 의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

다.
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소집 및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- ④ 위원회 간사는 담당부서장으로 하며, 위원장을 보좌한다.
- 제16조(인증위원회 회의 개최) ① 담당부서장은 인증유형, 시험기준의 변경 등 인증기 관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간사로 하여금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해 대면으로 개최할 수 없거나 의결 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(별지 제9호 서식)을 작성하여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의결권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다.
- **제17조(심의)**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서면의결 시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회 심의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제18조(기타사항)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 - ②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.

제 4 장 인증 취소 및 연장

- 제19조(인증취소) ① 진흥원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·인증을 받은 경우, 인증제품의 인증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한다.
 - ② 담당부서장은 인증제품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인증제품을 인증제품 대장에서 삭제하고 이를 공고한다.
 - ③ 신청인은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인증서를 진홍원에 반납하여야 한다.
- **제20조(인증 연장)** ① 신청인은 인증 연장을 위해 인증서의 유효기간 2개월 전에 인증 연장 신청서(별지 제10호 서식)를 제출해야 한다.
 - ② 시험자는 인증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후, 인증연장 신청서 내용 및 제출물을 검토하여 인증담당자에 해당 결과를 제출한다.
 - ③ 진흥원은 시험자의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1회에 한해 인증서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. 단, 시험기준과 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, 이를 적용한 시험 결과에 따라 인증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 5 장 기타

- 제21조(보안 조치 및 비밀 유지) ① 담당부서장은 시험·인증의 공정성, 신뢰성, 시험 시설의 보호와 신청자 및 시험결과에 대한 비밀보장 등을 위하여 시설 및 문서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② 시험자 및 인증담당자는 시험·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.

부 칙 <2017. 12. 04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8. 12. 28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신청인 제출물 목록

L : Lite, B : Basic, S : Standard

유형	제출물	비고
L,B,S	loT 제품 보안시험신청서	[별지 제1호 서식] 참조
L,B,S	loT 제품	시험제품
L,B,S	보안요구사항 준수 명세서 ※ 시험인증 기준 적용 항목을 식별하고 비적용 항목에 대한 사유 기술	-
L,B,S	제품 사용 설명서 ※ 제품 버전 및 구성요소 식별, 제품 주요 기능 설명, 제품 보안기능과 관련된 명령어 및 사용방법, 보안 관련 이벤트 목록, 제품 보안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제품 설정 및 환경 요구사항(권고사항 포함)	-
S	제품 사용 설명서(추가 내용) ※ 모든 외부 인터페이스 및 물리적인 입·출력, 제품의 모든 기능, 제품 제공 모든 명령어	-
S	시험서 ※ 제품에 구현된 보안요구사항별 시험결과, 자체 취약점 점검 결과	-

[별지 제1호 서식] IoT 제품 보안시험신청서 <개정 2018.12.28.>

접 수 번 호 제 호		loT 제	품 보안시	험신청	서
	상호				
	주소				
시쳐이	대표자		사업자등록번호		
신청인			전화		
	담당자		팩스		
			이메일		
	상호				
공동 신청인	주소				
	대표자		사업자등록번호		
인증	유형	☐ Lite	☐ Basic	☐ Sta	ndard
	제품유형				
	제품명				
	모델명				
시험제품	소프트웨어/ 펌웨어 명칭 및 버전				
	운영체제				
상기와	같이 시험을	신청하며, 기재시	나항에 허위사 설	실이 없음	을 확인합니다.
			년	월	일
			신	청 인	(서명 또는 인)
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					

시험신청 접수대장

접수번호	접수일자	신청인 (업체명)	시험제품명	접수자 확인	비고

[별지 제3호 서식] 시험신청 접수증 <개정 2018.12.28>

시험신청 접수증					
접수번호					
접수 담당자					
	상호				
신청인	성명				
	연락처				
시험제품명					
인증유형	☐ Lite	☐ Basic	☐ Standard		
비고					
위와 같	이 접수하였	음을 확인합!	니다.		접수인
	Ę	<u>년</u> 월	일		
한국인터넷진흥원					

[별지 제4호 서식] 시험제출물 인수/인계증 <개정 2018.12.28>

시험제출물 인수/인계증

□ 시험제품명 :

제출물명	형태	부수	Ŀ	비고
상기 제출물을 인계 및 인수하였습	하니다.			
		년	월	일
인계자 : (소속)		(성명)		(인)
인수자 : (소속)		(성명)		(인)

시험제출물 목록대장

접수	시험	인증	시험	
번호	제품명	유형	계약일	

관리번호	제출물명	제출물형태	비고
_			

신청인 협의록

번호	일자	요청사항	답변	신청업체 협의자	보완 완료일

[별지 제7호 서식] 인증서 수령증 <개정 2018.12.28>

인증서 수령증				
일련번호				
담당자				
	상호			
수령인	성명			
	연락처			
시험제품명				
신청구분	□ 신규발급	· □ 재발급		
인증유형	☐ Lite	☐ Basic ☐ Standard		
유효기간				
본 수령인은 위와 같이 인증서를 수령하여 그 내용이 신청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.			접수인	
한국인터넷진흥원 귀하				

제 - 호

위 촉 장

소 속:

성 명:

위 촉 기 간:

귀하를 사물인터넷(IoT) 제품 보안시험·인증 지침에 의거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인터넷진흥원장

위 임 장

	0			
인증위· 리인으로	원회 <u>9</u> 정하.	의결권 고, 인	행사와 증위원회	관 련 개 최
아 라	ł			
	년	월	일	
				(인)
	! 일어 인증위· 리인으로 네 따라	인증위원회 의 리인으로 정하 네 따라 아래 아 래	. 일에 개최되는 인증위원회 의결권 리인으로 정하고, 인 [.] 네 따라 아래 내용에 아 래	· 일에 개최되는 제 차 인증위원회 의결권 행사와 리인으로 정하고, 인증위원회 네 따라 아래 내용에 대한 의 아 래

[별지 제10호 서식] 인증연장 신청서 <개정 2018.12.28>

	인증연장 신청서					
	상호					
	주소					
신청인	대표자		사업자등록번호			
			전화			
	담당자		팩스			
			이메일			
	인증번호					
인증제품	인증연장 신청내용					
	넷(loT) 제품 1간 연장 신청		침에 의하여	상기 제품의 인 증을 1회에		
				년 월 일		
		신	청 인	(서명 또는 인)		
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						

<u>loT 제품 보안시험 계약서</u>

계	약 번	호:					
계	약	명:					
제	품	명:					
신	청 기	준: 🗌 Lite	Basic	☐ Stan	dard		
시	험 기	간:	년 월	일 ~	년	월	일
시	험 수 수	료: 해당사	항없음				
* =	특이사항:						
상호	선명날인	한 날로 부터	써 계약내용을 준 그 효력이 발생 보관하기로 한다.	하며, 이를 증			
Г	계 약 자]				년 월	일	
L.	게 ㅋ 시] "진흥원"		소 :				
		기 관 당	명: 한국인터넷건	진흥원			
		대 표 7	다:		(인)	
	"신청인"	주 -	소:				
		기 관 당	명:				
		대 표 7	다:		(인)	

IoT 제품 보안시험 계약서(계속)

제1조(목적)

이 계약의 목적은 (진흥원)이 (신청인)의 신청에 의하여 IoT제품의 보안시험(이하 "시험"이라 한다)을 수행함에 있어 (진흥원)과 (신청인)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는데 있다.

제2조(신의성실)

- ① (진흥원)과 (신청인)은 시험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(진흥원)의 IoT 제품 보안시험·인증 지침 및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시험착수 전, 시험기준이 변경될 경우 (진흥원)은 (신청인)에게 변경된 시험기준을 반영하도록 제출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(신청인)은 변경된 시험기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제출물 보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제출물 보안유지 및 관리)

- ① (진흥원)은 (신청인)이 시험을 위해 제출한 모든 제출물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할 책임을 진다. 다만, 천재지변 또는 시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상 및 파손의 경우에는 (진흥원)이 책임지지 아니한다.
- ② (진홍원)은 (신청인)의 동의 없이 (신청인)이 제출한 제출물을 시험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, 외부에 공개 시 서면으로 (신청인)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③ (진흥원)은 인증이 완료되면 제출물을 (신청인)에게 반환한다. 시험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(진흥원)은 제품 및 제출물 전체를 (신청인)에게 반환한다.

제4조(협조)

(진흥원)은 효율적인 시험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(신청인)이 사용한 컴퓨터 장비, 시험도구 등을 (진흥원)이 (진흥원)의 시험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(신청인)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(신청인)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 평가가 종료되면 (진흥원)은 (신청인)이 제공한 도구를 모두 반환하다.

제5조(책임소재)

- ① (신청인)이 제공한 제출물에 타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무단도용, 제출문서를 무단복제 하는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(신청인)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② (진흥원)은 (신청인)이 제공한 제출물의 보관에 소홀하여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여 (신청인)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 (진흥원)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IoT 제품 보안시험 계약서(계속)

제6조(계약의 해지)

(진흥원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.

- 1. (신청인)이 파산, 부도, 해산 등으로 인하여 평가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2. (신청인)이 자발적으로 평가를 철회하는 경우
- 3. (신청인)이 제9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

제7조(권리의무 승계)

(신청인)의 유고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(신청인)이 (신청인)권리 및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(진흥원)의 동의하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

제8조(분쟁의 해결)

- ① 본 계약의 수행 중 (진흥원)과 (신청인)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(진흥원)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.

제9조(계약의 효력)

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인증을 종료한 시점까지 유효하다. 단, 본 계약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, (진흥원) 또는 (신청인)은 변경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제10조(시험중단 후 재개)

시험중단 후 재개 시에는 평가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.

제11조(기타사항)

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(진흥원)과 (신청인)이 각기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 본 계약서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년 월 일

"진흥원" 주 소:

기 관 명: 한국인터넷진흥원

대 표 자:

(인)

"신청인" 주 소:

기 관 명:

대 표 자:

(인)

KISA

사물인터넷 제품 보안 **인 증 서**

인증유형

인 증 번 호 :

업 체 명:

대 표 자 🕫

주 소:

인 증 제 품:

유 효 기 간 :

상기 제품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물인터넷(loT) 제품 보안 인증 기준에 적합함으로 판명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

KISA

IoT-SAP CERTIFICATE

Type of Certification

Certificate Number:

Company Name :

CEO:

Location of Business:

Product Name:

Validity of Certificate:

The above product is subject to certification as it has been found to meet the certification criteria of KISA'S IoT-SAP

Signed by ____

President

KOREA INTERNET & SECURITY AGENCY

